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92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자원봉사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 조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재하여 교육자원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나. 이에, 현 조례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공헌을 평가하고 격려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포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포상 규정 신설 (조례 제6조의2)
-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격려를 위해 ‘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7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2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

라. 기타

- 입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 (별첨 1)
- 입법예고(2024. 9. 12. ~ 10. 3.)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자치법규·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별첨 6)

【별첨 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포상) 교육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포상) 교육감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별첨 2】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행정6급 나유신(02-2230-8564)

【별첨 3】

< 별지 제5호 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없음”	

【별첨 4】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제2항 관련)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	(변 호 사)	황은영
입안주무부서	평생교육과	통 보 (조 치) 일	2024. 10. 4.
관련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안 제6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육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동 개정(안)은 포상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함따라서,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원 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의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4A서울교육025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평생교육과		
	담당자명	나유신	전화번호	02-2230-8564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4년 10월 0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4년 10월 07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10월 07일</p>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나유신 (02-2230-8564)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마한얼(위원장), 김상일, 이민철, 이정현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0조~ 제00조	<p>-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격려를 위해, 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p>					원안동의

【별첨 7】

관계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24.2.17.] [법률 제19634호, 2023.8.1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7.]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1.5.] [법률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제8조(포상)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선정절차와 훈격은 「상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 5.]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4.3.26.] [서울특별시조례 제9190호, 2024.3.26., 일부개정]

제11조(포상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